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337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장진호

피고1. B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박인철

변론 종결2021. 10. 7.

판결 선고2021. 11. 1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32,000,000원과 그중 ①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7.부터, 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③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④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5.부터, ⑤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⑥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⑦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⑧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⑨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⑩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⑪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⑫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⑬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각 2021.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32,000,000원과 그중 ①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7.부터, 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③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④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5.부터, ⑤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⑥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⑦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⑧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⑨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⑩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⑪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⑫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⑬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각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부동산 중 각 2/13지분에 관하여 2014. 5.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1,5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97,788,5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5.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1,5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6.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963,4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6 내지 10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2014. 5.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E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1 내지 19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5.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1,5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399,923,5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가 2014. 3. 중순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7.부터 2017. 10. 20.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억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② 피고 B는 위와 같은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2019. 6. 4.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05호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B가 항소했으나 2019. 9. 11. 항소기각되었는데(수원고등법원 2019노179호), 피고 B가 상고를 포기하여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5억 3,200만 원과 각 편취금을 수령한 날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날인 2021. 6. 30.까지1)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G, 피고 E, H, 피고 B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그 무렵 상속재산인 ㉠ 별지 목록 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되, 그 피담보채무는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별지 목록 6 내지 19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의 단독 소유로 하되, 그 피담보채무는 피고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25.자 이 사건 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 11.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1	피고 C	○ I조합1050만 원(채무자: 망인)	○ 16.12.30. 이 사건 분할협의 전 근저당권 모두 말소	○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3. 12. 30. 피고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망인)를 전액 변제함
	○ I조합2억 6,000만 원(채무자: 망인)4) 망인은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9,793,000원을 피고 B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			
2	○ I조합2억 6,000만 원(채무자: 망인)5)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 16.12.30.근저당권설정(I 조합 3억 3,800만 원, 채무자: 피고 C)○ 18.9.14. 소유권이전(J, K)		
3		○ L조합4억 300만 원(채무자: 피고 B)	○ 18.5.10.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	○ 이 사건 분할협의 전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 B가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담보로 설정된 것인데,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18. 5. 10. 임의경매로 매각됨
4			○ 19.6.27.소유권이전(피고	

1	피고 C	○ I조합1050만 원(채무자: 망인)	○ 16.12.30. 이 사건 분할협의 전 근저당권 모두 말소	○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3. 12. 30. 피고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망인)를 전액 변제함
			D)	
5				
6				
7				
8				
9				
10				
11				
12	피고 E		○ 18.12.6.근저당권설정(I 조합 2억 3,400만 원, 채무자: 피고 E)	○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5. 10. 29. 피고 E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채무자: 망인)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16.2.5. 이를 전액 변제함
13	○ 16.9.13.근저당권설정(M 조합 7억9,200만 원, 채무자: 피고 E)			
14	○ 19.6.27.근저당권설정(N조합 3억 2,400만 원, 채무자: 피고 D)			
15				
16				
17	○ L조합2억 6,000만 원(채무자: 망인)6) 망인은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9,620,000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18.11.21.소유권이전(0)		
18				
19	○18.11.21.소유권이전(P)			

③ 피고 B의 채무초과 피고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와 현재 모두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나.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을 피고 C 또는 피고 E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 C, D, E의 주장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믿을 수 없다(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은 1 내지 2억 원에 불과하다).

○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농사를 지어 상속재산의 형성,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1/2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 E도 망인을 도와 농사를 지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 B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816,413,000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여(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 B가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 포함, 피고 B가 사용한 망인 명의의 Q은행 계좌에 2013. 12. 13. 입금된 199,793,000원 포함),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B가 지급받을 구체적 상속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망인의 사망 후 피고 C은 피고 B가 주식회사 R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8. 7. 31.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피고 E은 피고 B가 N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6. 2. 5. 별지 목록 17번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4,450만 원) 피고 B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C, D,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액 기재 돈을 편취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각 피해액에 기재된 액수에 상응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이 2억 8,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졌고, 그 편취방법과 피해법익이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처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최초의 편취 시점인 2014. 3. 17.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5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5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은 비록 그 일부가 이 사건 분할협의 후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여분 주장에 대한 판단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피고 C, E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특별수익

을다 제4, 9,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816,413,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본다.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생전 증여액]

2007. 2. 22. 2,000만 원

2008. 2. 12. 200만 원

2009. 12. 28. 1,000만 원

2012. 5. 7. 5,000만 원

2012. 6. 12. 3억 1,000만 원(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13. 2. 8. 199,620,000원

2013. 11. 6. 2,500만 원

2013. 12. 13. 199,793,000원(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2012. 6. 12.자 3억 1,000만 원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생존 시에 망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비한 경우 채무자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다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망인의 생존 시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조합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L조합이 2017.

9.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억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3. 12. 13.자 199,793,000원

을다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망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실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2013. 12. 13. 위 Q은행 계좌에 199,793,000원을 송금한 것은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7).

다)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 3,683,675,040원8) ○ 생전증여(특별수익)의 가액: 816,413,000원

○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피고 B의 상속분 가액: 692,321,236원9) $\{= (3,683,675,040원 + 816,413,000원) \times 2/13\}$

○ 특별수익 가액: 816,413,000원

○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존재하지 않음

(= 692,321,236원 - 816,413,000원)

또한 설령 2013. 12. 13.자 199,793,000원을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계산한 아래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구체적 상속분:

44,963,852원)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른 피고 C, E의 상속채무 인수로 인하여 피고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무

61,538,461원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의 결과가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 3,683,675,040원

○ 생전증여(특별수익)의 가액: 616,620,000원(2013. 12. 13.자 199,793,000원 미포함할 경우)

○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피고 B의 상속분 가액: 661,583,852원

{= (3,683,675,040원 + 616,620,000원) × 2/13}

○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44,963,852원

(= 661,583,852원 - 616,620,000원)

○ 재산분할결과(채무면제 이익 반영): 61,538,461원

(= 400,000,000원 × 2/13)

○ 재산분할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되는지 여부 판단: 미달되지 않음

(= 44,963,852원 - 61,538,461원)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의 결과가 채무자인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어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김보현

판사전지은

별지

1)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분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고, 위 1억 원이 15억 3,200만 원 중 어느 금액에 대한 것인지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15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별지 목록 순번

3) 권리변동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기재한다.

4) 망인은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9,793,000원을 피고 B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

5)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6) 망인은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99,620,000원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7) 2013.12. 13.자 199,793,000원을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 관한 가정적 판단은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한다.

8)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9) 원 미만 버림

10) 망인이 별지 목록 2, 3번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16. 12. 30. 이를 전액 변제한 사실, 망인이 별지 목록 17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L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피고 E이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016. 2. 5. 이를 전액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포함한 피고 C, E의 채무인수의 결과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아 61,538,46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